



: 2017-12-28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13다4176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인수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재나129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의견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재심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에서 망 A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 B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인 2012. 8. 16. 농지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2000다45778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가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성취를 의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와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대가의 상환은 농지개혁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소위 법정조건에 해당하여 민법 제150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 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농지대가를 상환하여 원심판결 별지2,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 원고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의 1953. 5.경부터 1979. 10. 11.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A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망 A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권리남용의 재항변과 관련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A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농지대가의 상환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를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농지대가 상환기한인 1998. 12. 31.이 지나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1998. 12. 31. 시점에 원심판결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고, 원심에서의 시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



: 2017-12-28

판시 액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농지분배연도의 양곡수납가격을 1998. 12. 31.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용덕



: 2017-12-28

대법관 박상옥